



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
고용 안정 부문 실업 보험



[일자]

[회사]

[회사 주소]

사회보장번호	청구자	혜택연도 시작일	마지막 근무일
000-00-XXXX	Susan Doe	9999/99/99	9999/99/99

결정

[비적시]

귀하의 비부과에 대한 요청서의 검토 후 귀하의 요청서가 비적시에 해당함을 결정내렸습니다. 귀하의 요청서는 양식서가 발송된 일자로부터 15 일 이내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므로 귀하의 요청서는 불허되었습니다.

[비자격 이유- NCUI 551 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]

귀하의 계정에 대한 초기 청구안과 잠재적 비용의 통지(NCUI 551)는 비부과 요청에 대한 이유를 North Carolina 고용안전법의 96-11.3 조항으로부터 기재하였습니다. 귀하가 비부과 요청에 대하여 나타내신 이유는 본 법의 비부과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[비자격 이유 - 사업 소유권의 변경]

귀하의 비부과 요청서에 청구자가 사업 소유권의 변경으로 인해 분리되었다고 기재하셨습니다. 본 분리 이유는 작업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고려되며 North Carolina 고용안전법의 96-11.3 조항의 비부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귀하의 비부과에 대한 요청은 불허됩니다.

[불허 - 기타]

자유형 문장

본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상세한 내용과 함께 고려를 원하시는 정보를 제출하여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. 귀하의 항소는 본 결정안의 일자로부터 적시에 고려되기 위하여 15 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. 본 결정안은 적시의 항소가 없을 경우 최종적이 됩니다.

des.nc.gov 의 귀하의 청구자 셀프서비스 포털에 작성된 양식서를 업로드하시거나 우편으로 발송 혹은 팩스로 제출하여 주십시오

Post Office Box 25903
Raleigh, NC 27611-5903
Fax 919.715.7642

정보요청서에 대한 정확하고
적시의 응답으로서 비고용 보험
사기 방지를 도와주세요